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8년 8월 17일(금) (총 6쪽)	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담당자	한성준 팀장 (043-880-5711) 이상식 부장 (043-880-5693)
		담당부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사팀
		담당자	박상용 팀장(02-785-8782) 유현지 과장(02-785-8770)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많아 -

최근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 조사기간 : '18. 3. 12. ~'18. 4. 13.
- 조사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등

□ 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선택정보(의무표시사항)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 (광고 의무표시 사항) ①이자율의 범위, ②이자부과시기, ③부대비용 등

[부당성 우려 광고 유형]

(단위 : 건, %)

구 분	건수(비율)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153(68.9)	
거짓·과장광고 표현	34(15.3)	67 (30.2)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8.6)	
객관적 근거없는 최상급 표현	14(6.3)	
기타	2(0.9)	
계	222(100.0)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개(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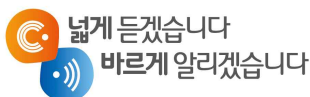
□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많아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 67건)가 있었다.

조사대상 광고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범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협업)
- (조사기간) '18. 3. 12. ~ '18. 4. 13.
- (조사대상)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 (조사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등

□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규정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사례가 가장 많아

-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실태조사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례는 222건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 표현 34건(15.3%),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순이었음.

[부당성 우려 광고 유형]

(단위 : 건, %)

구 분	건수(비율)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153(68.9)	
거짓·과장광고 표현	34(15.3)	67 (30.2)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8.6)	
객관적 근거없는 최상급 표현	14(6.3)	
기타	2(0.9)	
계	222(100.0)	

□ 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 선택정보(의무표시사항)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 이자부과시기·이자율의 범위·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선택 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음.

- 조사대상 대출상품 광고 가운데 이자부과시기는 62개(27.9%), 이자율의 범위는 31개(14.0%), 심의필 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은 29개(13.0%)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거짓·과장 등 부당성이 우려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어

- 「상호저축은행법」 및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 67건)가 있었음.

[부당성 우려 광고표현(예시)]


유형	광고 표현 검토
거짓·과장 광고표현	최저·최고 금리차가 크에도 불구하고 '연 6%' 등과 같이 최저금리만 표시 해 이자율 수준이 낮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
	'무서류'란 광고표현을 사용 했으나, 실제로는 소득증빙서류 등 제출 요구
	'무수수료'란 광고표현을 사용 했으나, 나중에 중도상환수수료, 저당권 설정 해지비용 등을 소비자가 부담
대출자격 오해 유발 광고표현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업계 최저' '최대 한도'

□ 인터넷·모바일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

- 인터넷·모바일 매체의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광고 의무표시가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한 광고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 현행 제도상 해당 매체의 광고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저축은행상품 사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함.

-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약관, 약정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약관, 약정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 두도록 합니다.
-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대출금리를 충분히 비교한 후 대출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대출금리 외 인지대, 저당권 설정비용, 주택채권매입비용 등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축은행 간의 부대비용, 중도상환해약금을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차주, 금액(채권한도액), 근저당권 기간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합니다.

※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부당성 우려 광고 사례	부당성 우려 광고 표현
1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p>대출대상 개인 및 법인 대출한도 소모자금 범위 내에서 당사 규정의 범위 이내 대출기간 12개월 ~ 60개월 대출금리 연 4.0% ~ 연 24.0% 연체금리 구간별 연체이율 적용 (최대 연 24.0%이하) 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서류 소득증빙서류 국세 /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기타 은행이 요청하는 서류</p>	부대비용 미표시
2	거짓·과장광고 표현	 <p>일반 신용대출 일반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채금을 지원하는 상품 *대출자격 일반인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 *대출금액 2억원 이내 *대출기간 1년 (연회차)</p> <p>신용대출 신용대출 일반대출 개인대출 대용가이드 돈을 부르는 올바른 선택! 높은한도, 낮은금리, 빠른대출, 쉬운대출, *신용도 무관함, 스텝 대출로 신속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보기 대출심사신청서</p> <p>자동차 담보대출 타서던 차 그대로 무담고, *무수수료 차량소재자 신청 가능 신청하기</p>	이자율 범위 미표시
3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p>금리비교 꼼꼼하게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p>  <p>평일 AM9시~PM18시 30분 15 5 어떤직업 어떤 상황에서도 OK!</p>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직업 어떤 상황에서도 OK!'
4	객관적 근거없는 최상급 표현	 <p>부동산 담보대출 저축은행 최고 대출한도, 힘이되는 최저 금리 다양한 담보를 통한 자금 지원</p>  <p>업계 최저수준의 이율,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지원해드리는 대출상품입니다. 가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유하신 아파트를 담보로 업계 최저수준 의 이율,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지원해드리는 대출상품입니다.</p>	'저축은행 최고 대출한도, 힘이되는 최저 금리' '업계 최저수준의 이율,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지원해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